

『구미 숲, 청보리·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일자 : 2011년 12월 13일

나. 청 원 자 : 1,276명

○ 구미시 송정동 454 구미상공회의소 김용창

○ 구미시 원평1동 964-186 구미경실련 윤종욱

○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304-3 김봉교

○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602 태양어린이집 오대호외 1,272명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2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2월 20일

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소개의원 : 이 명 희 의원

나. 청원내용

-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양호동~고아읍 괴평리 간 낙동강 둔치
100만평 중 체육시설 64만평을 제외한 잔여부지 36만평에

- “구미 숲”과 4.5km 수변경관림을 조성하고,
- 구미광역정수장 맞은편 낙동강 하중도(4만4천평)를 경관농업 경작지(봄~가을)로 활용해 “청보리 · 메밀 축제공원”으로 개발해 줄 것을 청원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9호
-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, 제75조
- 「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
- 낙동강 기본계획 보고서(재정비 2009.7월)
- 「하천법」
-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(건설교통부 2007.5.29)

4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본 청원은 국가하천 낙동강 하천구역 내 둔치(고수부지)의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의 청원사항으로써,
- 하천구역 내 둔치의 효율적인 보존과 개발을 위해서는 청원사항의 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을 설정하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, 기술적 타당성,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,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며,
- 아울러,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목적시설물의 규모, 배치, 형태, 공사방법 및 기간, 소요비용 등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, 비교, 검토를 거쳐 둔치 활용의 최적안이 도출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,

○ 둔치의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인 하천법, 낙동강 기본계획
(재정비 : 2009.4.2),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(국
토해양부 : 2007.5.29)등,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,
「구미시 의회 청원심사규칙」 제11조 2항에 의거 “시장이
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”에 해당되므로, 본회의에
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(附議)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6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8. 심 사 결 과 : 의견서 채택

붙 임 : 의견서 1부.